

『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3월 2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3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4월 6일

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1979년에 준공된 비둘기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전반적인 보수·보강등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현 시설을 매각하고 교리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부지를 매입 신축 이전하여 직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- 현재 추진중인 인동동 신청사 예정부지는 실제 임야로서 활용도가 낮으며,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접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【 취득재산 】

☐ 비둘기아파트 신축 부지

- 토 지 : 7,000m²
- 기준가격 : 2,345,000천원(분양가 기준)

☐ 인동동 청사 추가 확보 신축 부지

- 토 지 : 20,000m²
- 기준가격 : 1,508,450천원(가감정액)

【 처분재산 】

☐ 현 비둘기아파트

- 토 지 : 1필지 11,565m²
- 건 물 : 6,094m²
- 기준가격 : 9,777,444천원(가감정액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5조, 제11조, 제1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계획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건물을 처분하고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매각 1건 매입 2건임

○ 주요내용은

- 현 비둘기 아파트를 매각하고, 신축 부지를 매입 하려는 것으로서 구미시 형곡동 65번지 대지 11,565㎡(감정가 9,777,444천원)를 처분하고 구미시 선산읍 교리 체비지 7,000㎡(분양가 2,345,000천원)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
- 인동동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예정부지를 추가 매입 하려는 것으로서 구미시 인의동 산 38번지 외 2필지 20,000㎡(감정가 1,508,450천원)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노후된 비둘기아파트 매각 및 신축부지 매입건은 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리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인동동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정부지 추가 매입건은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가확보는 타당하나, 부지 매입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